



주목할 만한 내용:

1. 지원산업 발전 촉진 방안에 관한 2020년 08월 06일 제115/NQ-CP호 결의
2.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토지 임대료 15 % 감면
3.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소득이 연간 1억동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부과대상
4. 에어컨에 대한 특별소비세
5. Hedging 거래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
6. EVFTA 원산지 증명서 관련 지침
7. 인터넷을 통해 수입된 소프트웨어 관세 평가(Customs Valuation)

01

조세 관리

02

개인소득세

03

부가가치세

04

특별 소비세

05

외국인 계약자세

06

무역 및 관세

조세 관리



주목할 만한 내용

호치민 세무국의 2020년 상반기 세금 징수현황 및 주목할 만한 사항:

i. 상반기 현황

Covid-19의 영향으로 세무감사/조사 및 세무부채 징수를 통한 세금징수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임.

- 총 징수액: VND 103.255 Bil 국가예산대비 39,62%, 2019년 동기 대비 9,33% 감소 (최근 몇년간 가장 낮은 수치);
- 세무 감사/조사: 9.500개 회사에 대해 진행. 2020년 계획 대비 39,61%, 2019년 동기 대비 97% 증가. 이에 따라 총 징수액은 VND 1,800 bil 증가하여 2019년 동기 대비 132,15% 증가. 세무상손실 VND 9,300 bil 감소;
- 세무부채 징수: VND 2,855 bil 징수, 2019년 동기 대비 1,96% 증가;
- 세금환급: 1.125개의 경우에 대해 세금환급이 이뤄짐. 환급액은 VND 7,119 bil로 2019년 동기대비 8,37% 증가

ii. 하반기 계획

- 세금 징수: Covid-19 영향을 받은 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함과 동시에 세금징수 계획을 최대한 달성 (2016-2020 기간 계획의 약 98 % 달성) 하는데 목표를 둔다
- 세무 조사/ 감사: 2020년에는 위반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감사를 수행하지 않고, 세무상 고위험 기업, 이전가격, 부동산기업,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감사에 집중한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세무 리스크 분석에 적용한다.
- 세금 정책: 제41호 시행령, 제42호 결의, 제 94/2020/QH14호 결의, 제68/2020/ND-CP호 시행령 수행에 집중한다.

(호치민시 세무국의 2020년 상반기 세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새로운 규정

지원산업 발전 촉진방안에 대한 제15/NQ-CP호 결의

정부는 지원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무 지원사항을 제시하였다.

- 세무 절차 단순화
- VAT 환급 제도와 환급기간 조정 등의 VAT 법률 수정
- 자동차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정책 수정
- 수출가공기업(EPE)의 내수판매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
- 이전 가격 및 조세 포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 부처 및 부서와 협력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기업의 토지 임대료 15 % 감면

총리는 2020년 05월 29일 제 84/NQ-CP호 결의에 따라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기업의 2020년 토지 임대료 감면에 관한 제22/2020/QD-TTg 호 결의를 2020년 08월 10일 발표했다.

따라서 관련기관의 결정 또는 계약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연납하는 방식으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직접 임대한 기업, 단체, 가구, 개인은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 및 사업을 15일 이상 중단하는 경우 2020년 토지임대료의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본 규정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사용자의 사업 중 국가에서 직접 임대한 토지에서 수행되는 하나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개인소득세



지침 문서

근로 계약과 서비스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개인소득세 ("PIT") 계산시 총소득은 두가지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 합계금액에 누적세율을 적용

2020년 7월 14일 하노이 세무국은 PIT 공제에 대한 제 65283/CT-TTHT 호 OL을 발행했다

회사가 근로자와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과 서비스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동 2개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 및 기타 과세기간에 발생한 급여 및 임금으로 인한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PIT를 공제해야한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소득이 연간 1억 VND이상인 경우 PIT 및 VAT 부과

2020년 7월 16일 하노이 세무국은 e-commerce 활동으로 인한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정책에 관한 제 66230/CT-KK&KTT 호 OL을 발행했다.

소프트웨어 제공, 소셜네트워크 콘텐츠 제작등과 애플리케이션 배포, 콘텐츠 공유 등은 서비스 활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부터 발생하는 연간 매출이 1억VND 이상인 개인은 소득이 발생할 때 마다 과세대상 매출액에 세율(VAT: 5%, PIT: 2%)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 보험 납부 지연

2020년 8월 10일 베트남 사회 보장청은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납부중단 계속에 관한 제2533/BHXX-BT호 OL을 발행했다.

Covid-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는 노동부 -보훈사회부의 2020년 5월 4일 제1511/LDTBXH-BHXH호 OL에 따른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납입 중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행 규정 및 지침 문서에 의해 최대 2020년 12월말까지 퇴직 및 유족연금 납부를 중단 할 수 있다.

2020년 노동조합비 면제 (직원 부담금)

2020년 8월 6일 베트남 노동 총연맹은 노동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추가한 제808/LTD호 OL을 발행했다.

기본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노조원은 해당 급여를 받는 동안 노동조합비가 면제된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노동조합비 면제는 2020년 1월 23일(Covid-19 대유행에 대한 2020년 4월 1일 제 447/QD-TTg 호 결정시점)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부가가치세



지침 문서

외국기업 또는 수출 가공 기업 ("EPE")에 수수료를 받고 제공되는 중개, 고객 소개 수수료 및 고객 관리 활동에 대한 VAT 세율

베트남 현지 세무당국은 외국 기업 또는 EPE에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중개, 고객 소개, 고객 관리 활동이 수출 활동(VAT 세율 0%)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i) 외국 기업 또는 EPE 기업 (수출에 대한 VAT 세율 0% 적용) (ii) 베트남에 있는기업 (VAT 세율 10% 적용)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8월 10일 제73953/CT-TTHT호 OL)

합병된 회사의 지사에 대한 VAT 미환급

합병된 회사의 지사에 대한 VAT는 사업 종료시 환급이 불가능하며, 타 회사에 합병될 때 규정에 따라 해당 세금 확정신고 의무는 합병된 회사로 이전되어야 한다.

(국세청 2020년 8월 10일 제 3208/TCT-K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지침 문서

에어컨에 대한 특별소비세

제조업체의 설계에 따라 운송 수단(예: 자동차, 기차, 배, 항공기 등) 설치목적으로 용량 90,000 BTU 이하인 에어컨을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회사가 해당 에어컨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세관총국의 2020년 7월 24일 제4903/TCHQ-TXNK호 OL)



특별소비세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외국인 계약자세



Hedging 거래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

외국 기업이 베트남 기업에서 사용할 원자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베트남 기업과 상품 가격에 대한 Hedging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Hedging 거래가 법률 규정에 따른 파생 금융 서비스로 확인되는 경우, 외국 기업이 Hedging 거래를 통해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차액)은 VAT 면제 및 CIT 2% 세율이 적용된다.
- Hedging 거래가 법률 규정에 따른 파생 금융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 기업이 Hedging 거래를 통해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차액)은 외국 기업의 기타 소득(기타 금융 소득)으로 보아 VAT 신고 및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CIT 2%가 적용된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0년 5월 18일 제2027/TCT-CS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제 57/2020/ND-CP 호 시행령에 따른 (i) 자동차 제조 및 조립을 위한 자동차 부품 수입 ("제7a조에 따른 인센티브") 및 (ii) 자동차 조립 지원 산업 제품들 ("제7b조에 따른 자동차 지원산업 인센티브")에 대한 수입세 인센티브 적용

i. 제7a조에 따른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 :

- 자동차 모델에 관한 적용 조건 : (a) 전기 자동차 / 연료 전지 / 하이브리드 / 완전한 바이오 연료 / 천연 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을 제작 또는 조립하는 기업은 자동차 모델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b) 가솔린 및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작 및 조립하는 기업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하나 이상의 자동차 모델을 등록 할 수 있다;
- 기업은 자동차 모델과 등록된 모델 수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 최초 적용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세관 신고서 신고 절차 : 기업의 세금 인센티브 해당 기간 동안 제7a조 6항에 따라 신고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제작 및 조립에 사용된 수입 부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센티브 심사 기간에 공장 품질 검사표가 발급되는 경우 0%의 세율이 적용된다.

ii. 제7b조에 따른 자동차 지원산업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

- 기업의 제조 및 가공 시설 조사 : 세무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청서류를 접수받는 담당 세관부서는 신청 기업의 제조 및 가공 시설, 기계 및 장비에 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한다.

iii. 전자 세관 시스템에 A43 유형 신고에 대한 Warning이 있는 경우 제7a, 7b조에 따른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부품 수입 신고를 확인한다

- Yellow channel 및 Red channel로 구분된 신고서의 경우 : 규정에 따른 서류 확인 및 물품의 실질 조사와 더불어 특정 세금 인센티브 적용여부 확인을 위해 A43 유형에 따라 신고된 수입품들을 비교한다.
- Green channel로 구분된 신고서의 경우 : 0% 세율 적용 신청시 세관 시스템상 관련 내용과의 적절한 비교를 위해 관련 정보 및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관한다.

(세관총국의 2020년 7월 24일 제4929/TCHQ-TXNK호 OL)

유럽 연합 - 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의 원산지 증명서 ("C/O")에 대한 지침

수출입 부서 및 산업통상부는 최근 C/O 발행 기관 및 기업 협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했다.

i. 수출 업체는 www.ecosys.gov.vn 를 이용하여;

- 6,000 EUR 이상 재화의 경우 EUR.1 양식의 C/O 신고
- 6,000 EUR 이하 재화의 경우 선적서류 신고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수출재화 원산지 자체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ii. UK 수출시 수출 업체는 EUR.1 양식의 C/O를 신고하거나 동 OL 지침에 따라 원산지 자체 증명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해야 한다.

본 OL은 다음을 포함한다.

- 부록 I : 베트남의 EUR.1 양식 C / O 신고 지침
- 부록 II : 베트남의 EUR.1 양식 C / O를 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목록

(세관총국의 2020년 7월 30일 제0811/XNK-XXHH호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단순가공 및 조립여부는 수출품의 베트남 원산지 신고 조건 충족여부 대한 충분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Dong Nai 관세청의 제1506/HQDNa-GSQL호OL에 따라 회사가 단순한 가공 및 조립 만 수행하는 경우 제31/2018/ND-CP호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역 가치 기준 (LCV) 또는 관세 분류 변경 기준 (CTC)을 적용하지 않고도 베트남 원산지 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

(관 세 청 2020 년 7 월 30 일 제 1506/HQDNa- GSQL호OL)

보건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 장비 및 기구 수입시 VAT 10%가 부과된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의료 장비 및 기구는 VAT 10%가 부과된다 :

- 2015 년 02 월 27 일 제 26/2015/TT-BTC호 시행 규칙, 제1조, 8항; 또는
- 2014 년 06 월 26 일 제 83/2014/TT-BTC호 시행 규칙, 제4조, 5항; 또는
- 2011년6월21일 제24/2011/TT-BYT호 시행 규칙과 같이 발행된 보건부의 허가서에 따라 수입된 의료기기; 또는
- VAT 5% 세율 적용 지침에 대한 보건부 서면 확인서가 없음.

(관세총국의 2020 년 8 월 14 일 제5379 / TCHQ-TXNK호 OL)

인터넷을 통해 수입된 소프트웨어의 세관 신고 금액(Custom Valuation)

재무부의 2015년 3월 25일 제39/2015/TT-BTC호 시행 규칙 제6조를 개정한 2019년 8월 30일 제60/2019/TT-BTC호 시행 규칙 제1조 5항에 근거하여 최초 수입된 제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하기 위해 수입된 제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는 기계 및 장비의 가치에 포함되지만 관세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54/2014/QH13호 관세법령 제1조 및 제4조 6항에 따라 재무부의 2017년 6월 27일 제 65/2017/TT-BTC호 시행 규칙과 같이 발행된 베트남의 수출입 재화 목록은 2019년 2월 5일 제09/2019/TT-BTC호 시행 규칙으로 수정 보완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활성화 코드 " 에 대해서는 HS 코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세관 관리 대상이 아니며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시 통관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관 세 총 국 의 2020 년 7 월 20 일 제4816/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